

의안번호	제466호
의결 연월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16일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지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6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6일
발의자 : 박지현,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1. 제안이유

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음으로 조례에 이를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도지사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임대(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9조의2(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도지사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p>

관계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